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공고 제2025-25호

2025 뿌리기업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 모집 공고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에서는 고용노동부, 경상북도의 「2025년도 뿌리기업 선도기업 육성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경북 지역의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핵심 뿌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03월 18일 (화)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장

지원사업 요약서

- **사업목적** : 경상북도 도내 뿌리기업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기업의 기술 경쟁력 및 중장기적 발전을 통한 뿌리산업 기술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함
- **접수기간** : 3월 31일(월) ~ 4월 4일(금), 16:00까지
* 주의사항 : 접수서류는 2025년 4월 4일(금),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지원분야 및 지원금**

지원내용	지원금	채용약정
뿌리기업 시제품 제작 및 개발 비용	최대 15,000천원	지원금 15,000천원/ 신규채용 1명

* 본 사업은 신규인력 채용약정 사업임.

- **문의처** :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벤처창업전략팀 김선형 연구원
(T. 053-245-5092, E. shkim2@gitc.or.kr)



1 지원개요 및 사업내용

1 지원개요

- 지원 규모: 300백만원(20개사)
- 사업 기간: 협약일 ~ 2025년 10월 31일
- 지원 대상: 경상북도에 소재한(본사, 공장, 연구소 등) 14대 뿌리산업코드*를 보유한 중소기업
 -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지정하는 산업분류코드(붙임 참조)
- 지원 분야: 14대 뿌리산업 분야(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사출프레스, 적층제조산업, 정밀가공, 사업용 필름 및 지류, 로봇산업, 센서산업,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설계산업)
 - ※ 30인 ~ 300인 미만 뿌리기업(100인 이상 기업 우선 지원)

2 사업내용

- 최대 지원금 기업당 15,000천원 이내
- 지원 내용

구분	선택 지원 내용	지원금액
기업지원 (필수)	시제품 제작	신규인력 채용 1명 (기업당 최대 15,000천원)

- 참여기업당 지원금 최대 15,000천원, 1명의 신규인력 채용 및 1건의 시제품 제작 필수

* **신규인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필수(고용보험 가입일이 지원 협약 체결일 이후)**

* **신규인력은 경상북도 내 근무를 원칙으로함**

- 지원 조건

- (산업분류) 경북 도내 소재 유지, 뿌리산업 분류 코드 보유(업종 코드 증빙서류* 제출)

* 아래 3가지 증빙서류 중 1개 이상 제출

- 1)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 > 뿌리기업 확인서 > 뿌리기업 확

인서 제출

2)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사업장> 정보조회>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 관리번호(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고용업종 검색화면 제출

3) 홈텍스 홈페이지 로그인> my홈텍스> 기타세무정보> 사업자등록 사항 및 담당자 상세안내 페이지 화면 제출

- (신규채용) 지원 협약 체결일 이후 채용자(고용보험가입이력)
- (고용유지) 당해연도 말일 기준 참여자의 고용유지

○ 지원금은 공급가액만 지원(결과보고서 제출 후 사후 정산)

- 예) 15,000천원 지원 시 1,500천원은 기업에서 부담, 총 16,500천원

3 사업 추진 절차

절 차	내 용
신청서 접수	○ 2025. 03. 31(월) ~ 2025.04. 04(금) 16:00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1차 기업평가(신청자격 검토 및 중복성 검토) ○ 2차 사업평가(서면평가) ○ 평가일정: 상시 개최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선정결과통보: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이후
↓	
협약 체결	○ 협약 체결 : 선정평가위원회 이후
↓	
사업 추진	○ 협약일 ~ 2025. 10. 31까지
↓	
중간 보고	○ 중간점검: 2025. 7월 ~ 8월 예정
↓	
최종결과 평가	○ 최종결과 평가: 2025. 10월 중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선정평가 기준

① 평가방법

- 1차 기업평가와 2차 사업평가로 구분하여 추진

	구분	배점	비고
1차	기업평가	50점	서류심사
2차	사업평가	100점	서면심사

- 1차 기업평가: 제출서류 검토, 신청자격, 중복검토
- 2차 사업평가: 서면평가
 - 평가위원회는 관련 분야 내외인원 2인, 외부전문가 3인 이상으로 심사위원 구성하여 평가
 - 발표평가 추진 시 과제수행 총괄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부득이한 경우 과제수행 참여 인력으로 대체 가능(지원기관과 사전 협의 후 위임장 첨부)함
-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 수행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이의제기를 통한 평가위원회 재개최 여부는 지원기관에서 결정함

2 평가항목

○ 1차 기업평가 항목 (30점 미만일 경우 탈락 처리)

평가항목	평가내용
기업 업력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100인 이상의 경우 가점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산업분야와 기업 업태의 적합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기업 및 우대기업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수출프론티어기업, 여성기업, 여성우수기업, 장애인기업, 청년친화기업 등
사업참여경력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참여 기업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국가(고용)지원사업 참여 경력 - 다양한 기업대상 지원을 위해 참여빈도가 낮은(사업참여 이력이 적은) 기업을 우선 선정 ※ 국가고용지원사업 참여 기업 신뢰도 판단 - 1건 이상 국가고용지원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고용 및 기업성장)목표달성에 따라 차등된 점수 지급. 1건이라도 목표달성 못한 경우 미달성 기업 점수로 지급
기업성장가치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안정성(24년도 부채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성장도(24년 대비 25년 매출증가 예상)
기업 기술우수성 및 사업 수행 역량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품질인증, 기업인증, 지식재산권 등록 실적 (CE,ISO,SP 인증 등 보유현황, INNO-BIZ, 벤처기업확인, 기업부설연구소 등 보유현황, 국내·외 특허, 실용시안 등 등록 실적)

○ 2차 사업평가 항목 (70점 미만일 경우 탈락 처리)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추진의 당위성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의 필요성 및 적합성 예산편성의 적정성
사업추진역량 및 실행가능성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추진 전문인력 확보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추진 인프라 기반 구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기간 대비 추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추진에 필요한 네트워크 및 파트너쉽 정도
일자리 창출 효과성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기업의 고용유지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창출 목표 및 달성 가능성
기술·제품 경쟁력 및 개발 내용의 구체성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기술·제품 대비 비교우위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제품의 시장성 및 차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사업화 추진전략 및 성과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과물에 대한 활용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사업 이후 사업화 전략의 적정성

○ 최종 참여기업 선정방법

- 최종선정을 기업평가와 사업평가 배점 총합을 기준으로 심사

3 과제 신청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5. 3. 31(월) ~ 2025. 4. 4.(금) (1주간), 16시까지
- 양식교부처 : 공고문, 제출서류 등의 양식은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gitc.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접수방법 : 온라인(e-mail)접수(직인날인 스캔본 제출)
 - * 주의사항 : 접수는 2025년 4월 4일(금),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담당자 수취 확인 필수)
- 심사방법
 - 서류접수 → 1차 기업평가 → 2차 사업평가 → 최종선정
 - * 서류 접수 후 필요시 현장 실사를 할 수도 있음
- 제출서류

구분	서류명	비고
필수	사업신청서(붙임 1 참고)	1. 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개인정보이용동의서(사업주) 4. 참여확약서 5. 신규 인력 채용예정 확약서
	산업분류 제출서류(1~3) 중 증빙서류 1개 이상 제출	1. 뿌리기업 확인서 2.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상세안내(홈텍스) 3.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재무제표(최근 2년('22, '23년))	
	사업자 등록증	
해당시	지식재산권, 인증관련서류 (국내외특허, 실용시안, ISO, CE, NEP, RCC, SP, GS등)	
	우수기업 인증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INNO-BIZ, (수출)유망 중소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수출프론티어기업, 여성기업 청년친화기업 등)	

○ 접수 및 문의처

구분	접수처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이메일 접수: shkim2@gitc.or.kr
	담당자: 전략기획단 벤처창업전략팀 김선형 연구원 (Tel. 053-245-5092 / E-mail. shkim2@gitc.or.kr)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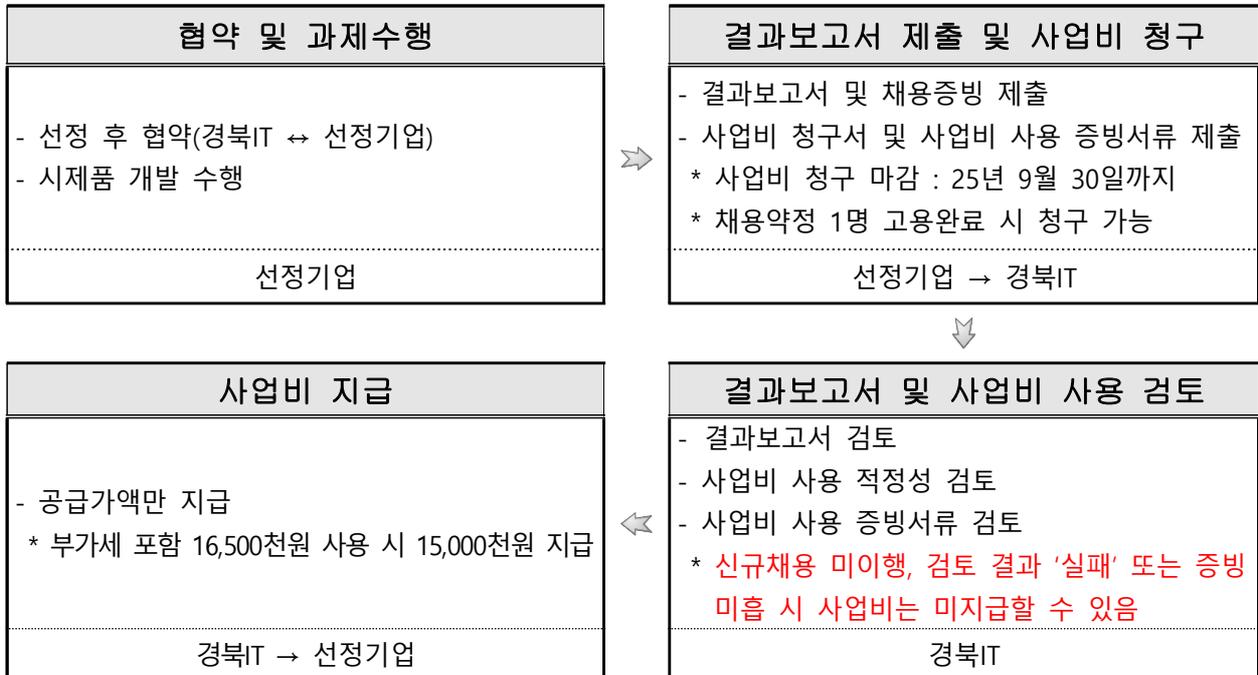
유의사항

1 사업비 편성

- 보조금은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 재료비, 제작비 등 과제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만 편성 가능
 - ※ 인건비, 간접비 편성 불가; 완제품 및 측정기기·자산성 물품구매 불가; 양산용 재료구매 불가
-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편성(공급가액만 지원)

2 사업비 지급 및 관리

- 사업비는 선정기업에서 사업비 先사용 후 청구에 따라 (재)경북IT 융합산업기술원에서 선정기업으로 사업비 지급함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금 청구 마감 : 2025년 9월 30일
- 사업비 청구는 채용약정 1명 고용완료 시 가능
- 사업비 변경 필요 시 사전 협의 및 공문 처리
- 각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등의 협약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비의 부당 사용 등의 문제가 사업 종료 후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 조치 취할 수 있음

3 기타사항

- 지원 제외 대상
 - 경상북도 이외 소재 기업
 -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이상, 300인 미만인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뿌리산업 코드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
 - 타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은 기업
 - 고용노동부 사업 내 같은 신규채용인원으로 타사업 지원을 받는 기업
 - 신청기업과 공급 업체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있는 경우(기업, 기업대표, 임원, 회사 가족 등이 공급 업체 관계자인 경우)
 - 휴업·폐업 중인 기업,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및 채무 불이행 기업
 - 기타 본 사업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등
- 수혜기업 선정은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선정하고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환하지 않음
- 신청기업의 단순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시 차회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

구분	과제선정 취소 대상
검 토 기 준	<p>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과제선정을 취소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 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2. 타 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4. 기타 전담기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5. 제출된 서류 및 사업신청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본 지원사업 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025 뿌리기업 선도기업 육성지원 사업 (FAQ)

【신청관련】

Q1. 신규인력이 경북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가?

- ☞ 본 사업은 사업주의 채용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참여자의 주소지는 타지역 이여도 신청 가능

Q2. 타사업에서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경우 참여가 가능한가?

- ☞ 타사업에서 지원받는 신규인력 대상자와 뿌리기업 선도기업 육성지원 사업 대상자가 중복되면 참여 불가, 중복이 안되면 참여 가능

【고용승계】

Q1. A기업 → B기업으로 인수합병의 경우, B 기업으로 사업협약일 이후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됐는데 2025년 신규입사자로 보는지?

- ☞ 고용 승계로 신규 입사자로 보기 어려움

붙임 뿌리산업의 범위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2. 16.>
뿌리산업의 범위(제3조 관련)

□ 기반 공정산업

1. 주조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4131	주철관 제조업
	24311	선철주물 주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4322	동주물 주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30101	주물주조기계

2. 금형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3. 소성가공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3	철강선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591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24101
29224102		기계 프레스
29224801		금속 단조기
29224802		금속 인발기

	29224803	나사 전조기
	29224804	금속선 가공기
	29224809	기타 금속성형기계

4. 용접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4132	강관 제조업	
	24133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5122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용기 제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26224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91	전자축전기 제조업	
	26292	전자저항기 제조업	
	26293	전자카드 제조업	
	26294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122	화물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202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30203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31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31202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31910	전투용 차량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5995100	용접봉
		27216109	기타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28909301		아크 용접기	

	28909302	저항 용접기
	28909309	기타 전기용접기
	29199201	가스 용접기 및 절단기
	29199209	기타 용접기
	29271102	반도체 조립 장비
	29271103	칩마운터(Chip mounter)

5. 표면처리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5922	도금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0499210	금속표면처리용 화합물
	28909804	전기도금 및 전기분해용 기기
	29299104	금속 표면처리기

6. 열처리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5921	금속 열처리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150101	공업용로
	29150103	전기로

차세대 공정산업

소재다원화 공정산업

1. 사출·프레스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2191	고무 패키징류 제조업
	22213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49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92101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
	29292102	플라스틱 압출 성형기
	29292103	진공 및 열 성형기
	29292109	기타 플라스틱 제조기계
	29292200	고무 가공기계

2. 정밀가공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5924	절삭가공 및 유사 처리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21101	레이저 가공기
	29221102	방전 가공기
	29221109	기타 전자응용 절삭기계
	29223101	머시닝센터
	29223102	전용기
	29223201	수치제어식선반
	29223202	범용선반
	29223801	드릴링기
	29223802	보링기
	29223803	밀링기
	29223804	탭핑기
	29223805	연삭기
	29223806	기어절삭기
	29223807	톱기계(금속용)
29223809	기타 금속절삭가공기계	

3. 적층(積層)제조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3112	안전유리 제조업
	23122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22100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4. 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17124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22292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29291109	기타종이가공기계

○ 지능화 공정산업

1. 로봇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2. 센서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3.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엔지니어링 설계산업

구분	분류번호	업종명 또는 품목명
뿌리기술 활용업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비고

1. 분류번호, 업종명 및 품목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에 포함된 뿌리기술 활용업종이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이라도 원재료를 1차 성형·가공하여 잉곳(ingot), 판, 봉, 관 등 1차 소재를 생산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3. 차세대 공정산업 중 지능화 공정산업은 기반 공정산업 또는 소재다원화 공정산업과 연계되거나 결합되어 활용하는 산업으로 한정한다.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 표에 열거된 뿌리산업의 업종명 또는 품목명 외에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업종명 또는 품목명을 추가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